

□ 第16次 司書書記官·司書事務官 會議 開催 現況

- ◆ 일 시 : 2004. 10. 21(목) 10:30
- ◆ 장 소 :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 ◆ 안 건 :
 - 회의 개최 주기 변경(연2회를 연1회로)
 - 집행부 변경
- ◆ 참석자 명단

대 학 명	참석회원	대 학 명	참석회원
강릉대학교	강우상	강원대학교	장성윤, 이영우
경북대학교	김진우, 변태현, 이현우	경상대학교	김상태
		목포대	김성자
부산대학교	김성수, 이두영, 안병재	서울대학교	김종은, 배홍식 신태숙, 장석일
순천대학교	신승철		
안동대학교	강경애	전남대학교	선정숙, 남윤범
전북대학교	한상필, 임상원	제주대학교	이영복, 양대옥
창원대학교	황영조	충남대학교	권관용
충북대학교	김재성	한국해양대학교	이철자
한국교원대학교	김규숙		
합 계			28명

□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권 공동대책위원회

1.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모임

- ◆ 일 시 : 2004. 7. 29(목) 14:00~
- ◆ 장 소 : 아카데미하우스 4층 회의실(서울 수유리)
- ◆ 안 건 :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예산, 인력, 연구팀 구성 합의

2.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권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채택 발표

- ◆ 일 자 : 2004. 8. 2
- ◆ 방 법 : 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 ◆ 내 용 : 성명서 및 행동지침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는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원문의 안방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저작물의 전송 및 복제와 관련된 권리 처리를 보다 손쉽게 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지식정보의 공적 접근 기회를 상당부분 축소시키고 있음은 물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실행의지와 그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 보상금제도 문제에 대하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 원문 공동이용 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합법적 방법을 모색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가 국가적인 위상과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탄생된 근본 취지는 인정되지만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공익적 기능과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합일점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시행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이 선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관계 당국(보상금 제도 주관 기관)은 도서관 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이 본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선행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명칭은 ‘디지털 원문 이용에 대한 보상

금을 지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 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국고 및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관계 당국은 중앙정산방식의 표준화된 보상금 과금 및 배분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도서관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내에서 생산된 비판매용 학술논문 및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학위논문에 대한 디지털 원문 전송은 도서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의 3에 의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유일한 '저작재산권자단체'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각 대학이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통해서만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감독권한'이 있고 '도서관'에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 편향된 약정체결은 반드시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곱째, 팩시밀리(FAX)를 이용한 자료 전송시 도서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여덟째,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환경이나 대학도서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 제28조 2항을 개정, 열람의 범위를 '도서관등의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대학 캠퍼스 내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안방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당국에서는 일방적인 제도 시행보다는 주관기관, 도서관 및 출판관련 단체,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협력적 환경이 조성되고, 합리적 법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제도 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보상금 문제 해결 및 각 협의회 회원 도서관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장·단기 행동 지침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 관련 연구, 법적인 자문, 정치적인 해결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04년 8월 3일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 대책위원회

관련단체 :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 공동이용 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 유보 요청에 따른
대학도서관 복제·전송 공동 대책위원회
회원 도서관의 행동 지침**

대학도서관 복제·전송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대책위원회)는 도서관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한(2004. 8. 4)바 있습니다. 성명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한 결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동 대책위원회 회원 도서관들이 함께 해야 할 행동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도서관들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하 동 센터)와의 약정은 공동 대책위원회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① 동 센터는 약정서상으로 모든 도서관을 산하기관으로 취급하고 사서를 수금원으로 생각하면서 잠재적인 범법자로 가정하고 있어 도서관과 사서의 명예와 권리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따라서 동 센터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현재 동 센터와 약정을 체결한 회원도서관은 즉시 약정을 파기하고 다른 회원도서관과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단결을 해치는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공동 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③동 센터는 도서관보상금 과금시스템 개발 업자를 통해서 회원도서관에 행하고 있는 약정 권유 행위는 앞으로 공동 대책위원회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인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회원도서관은 이용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①원문서비스가 중단되어 불편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도서관간의 상호대차를 강화한다. 원문DB로 이용하던 학위논문이나 잡지 기사 등의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회원 도서관은 종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②현 저작권법상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실물 교환(대출)이다. 따라서 회원 도서관은 실질적인 상호대차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 회복에 노력한다.
③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도록 상대 도서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용자들이 도서관과 함께 부당한 도서관보상금제도의 타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위논문의 원문DB는 앞으로 국회도서관보다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학위논문공동 이용을 위한 협의회(공동이용협)’를 통하여 이용한다. 대학 간행물도 학위논문과 같은 방법을 강구한다.

- ①학위논문은 다른 출판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학에서 학위 수여를 위하여 생산되는 특별한 저작물이다. 이렇게 볼 때 본 협의회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주도하고 있는 공동이용협에서 학위논문 원문DB 이용을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한다.
②앞으로 공동이용협은 학위논문의 공동 이용을 위한 대학도서관과 이용자의 이익과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본 협의회는 그 대안 모색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임을 천명한다.
③학위논문 납본시 각 도서관에서 받고 있는 ‘이용 동의서’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며, 이용 동의서를 받지 못한 학위논문은 동창회보에 광고를 하는 등 이용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공동이용협의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작권 확보에 최대한 노력한다.

넷째, 동 센터의 회원 단체인 (주)한국학술정보는 국내학술지원문서서비스 (KISS)를 통하여 회원도서관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서관보상금제도를 주도하여 도서관과 사서,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다음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회원도서관은 차기 계약을 유보할 것을 당부한다.

①(주)한국학술정보가 도서관과 KISS 이용계약을 체결할 시 LICENCE 계약과 Trial version으로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은 이용료를 인상할 명분을 만들고 도서관 보상금을 정수할 구실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②이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회원 도서관의 개별적인 계약이 아니라 본 협의회를 통한 단체계약을 추진한다.

다섯째, 본 공동 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여러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회원 도서관은 대책위의 결정에 따라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①그 첫 단계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 원문 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 대학교 도서관협의회 등 3자가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동 대책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제시하였으며,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정 내용을 제소하고 청와대와 유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통한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②만약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공동 대책위원회의 비상 총회를 소집하고 문화관광부 앞 집단 시위와 1인 시위를 통한 사회 이슈화와 보상금제도의 부당성을 홍보하며, 회원 도서관의 단결을 통한 요구 관철을 시도한다.

③이러한 일련의 내용은 각 협의회 홈페이지 및 도메리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있으므로 회원도서관은 이를 참고하여 동참한다.

우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단결하여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8. 3.

관련단체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3.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모임

- ◆ 일자 : 2004. 8. 17
- ◆ 장소 : 선크루즈호텔(강릉 정동진)
- ◆ 참석자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임원진(9명)
- ◆ 안건 :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모색

4.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권 공동대책위원회 발기총회 개최

- ◆ 일자 : 2004년 8월 24일
- ◆ 장소 : 한일관(서울 광화문)
- ◆ 참석자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임원진
- ◆ 내용 : 집행부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재정확보 및 회원단체 회비 분담금 책정
 - 위원장 : 김성중(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총무 : 강민아(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행정분과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변태현, 김연재, 이영우, 김종필)
 - 법률분과 :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자체구성)
 - 기구확대 :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동참키로 함

5.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권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참가

- ◆ 일자 : 2004년 10월 28일
- ◆ 장소 : 한일관(서울 광화문)
- ◆ 참석자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임원진
- ◆ 내용 : 저작권법 개정안 의견서 초안작성

6.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권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참가

- ◆ 일자 : 2004년 12월 8일
- ◆ 장소 : 한일관(서울 광화문)
- ◆ 참석자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임원진
- ◆ 내용 : 저작권법 개정안 의견서 작성완료 관계부서 제출 방안 모색(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도서관협회)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I. 개정의 필요성

저작권법의 정신은 제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즉 저작권법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 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인류문화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문화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저작물은 선인들이 쌓아놓은 문화유산의 바탕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특정한 저작물은 앞서간 선각자들의 유산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인의 영원한 소유물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존속기간의 제한 등을 통하여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창작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로 저작권법에는 제6절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항목을 두어서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허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제28조(도서관에서의 복제 등)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은 그 만큼 도서관이 문화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해온 바가 크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선대의 인류

문화 유산을 유지 계승하며 당대의 학술자료와 디지털 정보를 수집, 링크, 다운로드, 정리, 보존, 축적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학술 발전과 문명 진보에 기여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사명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저작재산권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사서의 재량권 또한 최대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와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Digital Contents 구축, 상호대차서비스의 확대, 통신망을 이용한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디지털 자원의 공동 개발 이용 등이 저작권법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아 도서관의 일부 기능이 마비 상태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서가 범법자가 될 개연성이 항상 상존하며 과중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조력해야 할 사서가 오히려 이용자를 감시하고 불편을 조장하는 방해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저작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대차(ILL)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전송 범위를 도서관으로 한정하여 디지털도서관(이하 DL)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범위를 현실에 맞지 않게 해석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내에서의 상업적 복사 행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용자의 권리가 도외시한 조항이 많다. 특히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도입은 그 궁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현실을 무시한,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이익을 대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도서관과 사서를 예비 범법자 집단으로 가정하고 저작권 단체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말았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학위논문을 생산하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 디지털화하고, 자비로 과금 장치를 하며, 보상금을 납부하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도서관은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반면에 저작권단체는 모든 책임을 도서관에 전가하고 과실만을 취하는 불공정한 제도이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학위논문을 비롯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간행한 비판매용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융통성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지금 원문DB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의 대부분이 대학도서관이며, 원문 DB의 절대

량이 학위논문임을 감안할 때 대학도서관의 주장이 저작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위논문의 저자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회원단체의 회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작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권리가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주장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용자보다는 저작자의 편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현저작권법의 개정시 도서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 주장이 담긴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II. 개정의견 제출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의견		
현행 규정	개정방향	사유 및 참고자료
제28조 ①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가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1인 1부 복제하는 경우	현 조항의 경우 현재 대부분 도서관에서의 복사는 복사업자가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 설령 복사업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서가 직접 복사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는 현실의 실상을 전혀 도외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조문이다.
제28조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법 조문의 취지상 전송 범위를 도서관에 한정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이용 하며 과금 방법은 도서관은 통하지 않고 저작권 단체나 국가가 직접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진정한 DL의 발전을 원한다면 도서관 건물이라는 장소적 한계를 초월하는 개념을 도입하여야 저작권보호를 위한 보상금제도의 진정한 목적을 달할 수 있다. 또한 전송범위를 도서관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DL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각 도서관이 DL의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p>②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u>도서관이 통상 구입하고 있는 동일 도서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u></p>	<p>이는 동시 열람시의 이용자 수에 대한 문제로서 원문 DB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 도서관에 원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상황을 도외시한 규정으로서 설령 소장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부수가 각각 이어서 개개 파일별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규정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동시 이용자 수를 그 도서관이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도서의 복본 부수에 맞추어 출판된 도서의 구입과 연계함이 타당하다.</p>
<p>제28조 ③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p>	<p>삭제</p>	<p>현행 규정은 DL발전에 엄청난 재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DL의 최종적인 목적이 도서관의 장소적,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항과 동일한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삭제함이 타당하다.</p>
<p>제28조 ④ 도서관 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를 함께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도서관 등이 비판매용으로 도서 등을 디지털 복제한 경우 그 도서 등을 판매용으로 디지털 복제할 수 없다.</p>	<p>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를 함께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도서관 등이 비판매용으로 도서 등을 디지털 복제한 경우 그 도서 등을 판매용으로 디지털 복제할 수 없다.</p>	<p>비판매용으로 이미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가 동일한 것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이미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고려하면 비판매용 DB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p> <p>한편 사업자 우선인 이 조항은 보완이 필요하다.</p>
<p>제28조 ⑤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한 도서관 등이 소재한 학교 안에서의 경우는 제외한다.</p>	<p>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한 도서관 등이 소재한 학교 안에서의 경우는 제외한다.</p>	<p>현행법은 도서관이 부담금 납부의 주체로 되어 있으나, 디지털화가 정부의 장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의 지급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이 보상금을 부담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금장치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즉 DB구축은 도서관이 하더라도 보상금은 도서관의 공익적 성격과 이용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 이용자 등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제를 한 도서관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과 그 도서관이 속한 학교 안에서의 보상금 징수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p>

<p>제28조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u>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저작재산권단체</u>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u>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저작재산권단체</u>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이 조항에 따르면 도서관이 저작권 보호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도서관과 사서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저작재산권단체는 저작권보호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p>
<p>시행령 제3조의 3(보상금 지급 방법과 절차)</p> <p>① 도서관 등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저작이접권자, 출판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단체(이하 "저작재산권단체"라 한다)에 지급할 수 있다.</p>	<p>도서관 등이 <u>디지털 복제한 도서 등을 복제 전송하고자 하는 자</u>는 저작재산권자(저작이접권자, 출판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단체(이하 "저작재산권단체"라 한다)에 <u>법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학에서 간행하는 비판매용 도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u></p>	<p>동법에서 도서관 등은 보상금 지급 주체가 아니다. 국가나 저작재산권단체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용자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과금하여야 한다. 도서관 등은 보상금 지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보상금 문제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와의 문제이다. 또한 대학에서 간행한 비판매용 도서 즉 학위논문, 학술잡지 등은 저작재산권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저작물이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3조의 3(보상금 지급 방법과 절차) ② 도서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복제 전송한 해의 다음해 4월 30일까지 보상금을 그 복제 전송의 내역과 함께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삭제</p>	<p>도서관은 보상금 지급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함이 마땅하다.</p>

7.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참가

- ◆ 일 자 : 2005년 3월 8일
-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서울 여의도)
- ◆ 참석자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공동 이용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임원진
- ◆ 내 용 : 공청회 참가 및 공동대책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